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

의안 번호	관련 98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23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2016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.

1.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현행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」는 제8조(장려금 등의 지급)에 “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”로 규정하고 있으나,
 -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**출하자는 종전대로 1천분의 150**으로 하고 **중도매인에게는 1천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상향 조정**하고자 하는 것임.
2.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.
 - “장려금지급” 관련 사항은 기존 가락시장 업무규정(제52조 장려금 지급, 1995.10.5.규정 '01.8.20.폐지)에 규정되어 있었으며, 농림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표준안(2007.7) 제89조(장려금 등의 지급)¹⁾에도 언급

된 내용으로, 그 세부적 지급율은 조례에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음.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규인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 제5항²⁾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해당되고,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.

3. 재의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음

- 농식품부의 불승인 및 재의요구

- 5.4일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하였고 5.16일 농식품부에서 “불승인하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” 통보한 것임.

농식품부의 불승인 내역

-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·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
-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므로 불승인 조치

- 위와 같이 2016년 5월 3일 의결되어 5월 4일자로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」을 농식품부에서 우리시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통보함에 따라,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 제1항3)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함.

-
- 1)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 제89조(장려금 등의 지급)
 -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가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()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- 2)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7조(도매시장의 개설 등)
 -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3) 지방자치법 제17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
 -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,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의 “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”를 “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,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장려금 등의 지급)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<u>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②~③(생략)	제8조(장려금 등의 지급) ① ----- -----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, 중도매인에게 <u>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-----.</u> ②~③(현행과 같음)